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제니공방 외 4개 기관 (지방보조사업자)

1. 「지방보조금법」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2023 하동군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방보조사업자 : 제니공방 외 4개 기관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기관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합계	10,000	0	10,000	10,000	0	
제니공방	2,000	0	2,000	2,000	0	
소예공방	2,000	0	2,000	2,000	0	
하동성가족 상담소	2,000	0	2,000	2,000	0	
하동한마음실버회	2,000	0	2,000	2,000	0	
아트플러스	2,000	0	2,000	2,000	0	

- 예산과목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행정과	평생 학습관리	평생 학습지원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6. ~ 11.
- 사업규모 :

(단위:천원)

기관명	사업명	총사업비	군비	수익자부담
합계		12,160	10,000	2,160
제니공방	자연을 엮는 라탄공예	2,400	2,000	400
소예공방	도자기 위에 나의 꿈을 그리다	2,400	2,000	400
하동성가족 상담소	성인지 감수성 올리고, 성평등문화 더하고	2,400	2,000	400
하동한마음실버회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실버대학	2,460	2,000	460
아트플러스	나의 MUSE(뮤즈) 하동	2,500	2,000	500

- 사업내용 : 군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학습문화 정착 및 학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 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3년 6월 일

하 동 군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22 하동군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방보조사업비 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7. 하동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행사 개최 시 안전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행사장 배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축제, 행사의 경우)
9. 보조사업자는 지방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하동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 나.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마. 보조사업자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때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별로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그 통장과 연계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자, 카드포인트 포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등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6.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8.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9.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하등군수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제출 후 하동군수의 정산검사를 거쳐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정산의 적합 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동군수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 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나 하동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월할 수 있습니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하동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조금 환수 또는 차기(익년도)년도 지원을 중단하거나,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하여 환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2.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부정청구에 해당되면 부정이익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공표가 가능합니다.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 보조금 지원기관
 - 나.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